

의안번호	2213899
의 퇴 인	윤종오의원
회 답 일	2026. 4. 7.
추 계 번호	25B5908

모빌리티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적정모빌리티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400만원(연평균 1,5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적정모빌리티서비스 기준 마련 (안 제11조)	74	—	—	—	—	74	15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교통격차의 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교통격차를 진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진단된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데이터와 지표 등을 생산, 공표, 보급하여야 함.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교통의 수단을 통해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내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교통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1조(적정모빌리티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절한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교통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12조(교통수단의 적절한 분담 및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이동권의 보장과 적정모빌리티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교통수단의 제공 수준과 교통이용자의 접근성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수단의 분담목표와 추진계획 그리고 교통수단 간의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4조(서비스 제공의 최종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의한 교통인프라의 기능 훼손 및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와 교통시설 관리자와의 갈등 상황으로 인하여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1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감축 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에서 수송분야에 할당된 목표에 대한 연도별 추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방안을 수립할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6항에서 정한 교통수요관리대책에 대한 도입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이행여부와 진단을 담은 평가를 차년도 연도별 추진방안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6조(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수립)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시·도계획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군·구 계획 중 수송분야의 감축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하여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송분야 감축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는 수송분야 감축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에서의 부분별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지방자치단체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예측의 적절성 평가 2. 지방자치단체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3. 지방자치단체 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권한범위 설정의 타당성 평가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이 필요한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상 및 이에 대한 조정 계획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결과 및 평가 계획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별 재정 투자계획	
7	안 제17조(모빌리티 전환의 시책 마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전환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공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교통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18조(모빌리티 전환의 추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7조의 모빌리티전환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 예산의 지원, 용자 등의 방법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1.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통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거나, 입찰을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그 운영을 위임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른 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3. 「도시철도법」 제25조의 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을 위한 사업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철도망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에 따른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연계교통시설의 확보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2조의 특별지역대책의 수립·시행 및 같은 법 제50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관련한 이용 보장 시책 국가는 광역교통수단 신설 및 통합요금제도의 운영과정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충돌에 의하여 모빌리티전환이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9	안 제19조(탄소보조금의 축소·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탄소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축소·폐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21조(공공교통 이용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1. 공공교통 이용자에 대한 요금 지원 2. 공공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추진 3.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활동의 지원 4. 보행과 자전거 등 무동력·무탄소 모빌리티수단의 보급 및 활성화 5.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교통 부담금 등의 감면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모빌리티수단 간의 연계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1	안 제22조(정의로운 전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라 시책을 마련할 때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12	안 제23조(교통데이터의 생산과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전환과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교통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교통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통데이터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장 최근의 현황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교통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항)	
13	안 제24조(이해당사자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정책의 기획, 입안,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등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이해당사자 참여를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정책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 및 참여의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함(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등 행정기구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참여 수준을 진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4	안 제25조(교통사업종사자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들을 교통사업종사자에 적용하고 교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에 따른 모빌리티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교통사업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5	안 제26조(주민제안제도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통격차 해소 등의 교통문제의 해결과 모빌리티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청구,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요구, 주민투표 등의 주민제안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1.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실시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정	의무규정
16	안 제28조(재정계획의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이동권의 보장과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조(교통격차의 해소)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빌리티 현황 및 교통격차 진단, 교통격차 완화·해소 등을 위한 시책 추진, 교통수단의 분담목표와 추진 계획, 교통수단 간의 연계계획 수립 등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해당 시책·계획의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교통격차 해소 등 대중교통 정책 개발 및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현황조사,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시책 평가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예산('26)</th></tr><tr><td>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대중교통 현황조사)</td><td>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td><td>800</td></tr><tr><td>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대중교통시책평가)</td><td>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체계적인 대중교통 계획수립과 효과적 정책시행을 유도</td><td>206('25) * 격년제로 시행</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대중교통 현황조사)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800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대중교통시책평가)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체계적인 대중교통 계획수립과 효과적 정책시행을 유도	206('25) * 격년제로 시행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대중교통 현황조사)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800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대중교통시책평가)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체계적인 대중교통 계획수립과 효과적 정책시행을 유도	206('25) * 격년제로 시행										
2	안 제12조(교통수단의 적절한 분담 및 연계)											
3	안 제14조(서비스 제공의 최종 책임)											
4	안 제11조(적정보빌리티서비스)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5	안 제1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송분야에 할당된 목표에 대한 연도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와 진단을 담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연도별 추진방안에 대한 평가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국토교통부 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 제8조에 따라 수송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연도별 감축목표 포함)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참고자료 1] 부문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주요 내용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내용]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전기수소차 보급</td><td> - 사업용 차량 전환전략*, 내연차 업계 보호 등 2035 NDC 「수송부분 전략」 수립(26. 상반기), 민간협력형 친환경 시범도시 조성 추진 등 * 버스 등 장거리 운송차량의 경우 수소차량 지원확대를 통해 '35년 전차량 전환 목표 등 </td></tr><tr><td>친환경 철도·항공</td><td> - 수소 철도차량 기본계획 및 충전소·연료비 등 지원 등 수소열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철도법」 제정('26) * 다목적 수소충전소를 구축(연천, '26.12)하고 교외선·경원선 등에 수소열차 실증운행 추진('27~) - 도로·철도 등 교통 유희부지 및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도로·철도 태양광 방음벽, 태양광 패널 포장도로 등 신기술 R&D도 추진) </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내용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용 차량 전환전략*, 내연차 업계 보호 등 2035 NDC 「수송부분 전략」 수립(26. 상반기), 민간협력형 친환경 시범도시 조성 추진 등 * 버스 등 장거리 운송차량의 경우 수소차량 지원확대를 통해 '35년 전차량 전환 목표 등	친환경 철도·항공	- 수소 철도차량 기본계획 및 충전소·연료비 등 지원 등 수소열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철도법」 제정('26) * 다목적 수소충전소를 구축(연천, '26.12)하고 교외선·경원선 등에 수소열차 실증운행 추진('27~) - 도로·철도 등 교통 유희부지 및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도로·철도 태양광 방음벽, 태양광 패널 포장도로 등 신기술 R&D도 추진)
구분	내용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용 차량 전환전략*, 내연차 업계 보호 등 2035 NDC 「수송부분 전략」 수립(26. 상반기), 민간협력형 친환경 시범도시 조성 추진 등 * 버스 등 장거리 운송차량의 경우 수소차량 지원확대를 통해 '35년 전차량 전환 목표 등								
친환경 철도·항공	- 수소 철도차량 기본계획 및 충전소·연료비 등 지원 등 수소열차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철도법」 제정('26) * 다목적 수소충전소를 구축(연천, '26.12)하고 교외선·경원선 등에 수소열차 실증운행 추진('27~) - 도로·철도 등 교통 유희부지 및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도로·철도 태양광 방음벽, 태양광 패널 포장도로 등 신기술 R&D도 추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6	안 제16조(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수립)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예측의 적절성 평가, 지방자치단체 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권한범위 설정의 타당성 평가 등을 포함하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련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7	안 제17조(모빌리티 전환의 시책 마련)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정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해당 정책의 내용 및 추진 방식, 재정 지원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8	안 제18조(모빌리티 전환의 추진)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예산('26)</th></tr><tr><td>교통정책종합연구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조사·평가)</td><td>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현황조사 및 관련 정책을 진단·평가</td><td>142</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교통정책종합연구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현황조사 및 관련 정책을 진단·평가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교통정책종합연구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현황조사 및 관련 정책을 진단·평가	142						
9	안 제19조(탄소보조금의 축소·폐지)	—	- 미대상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교통부문의 탄소 배출 차량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부문의 탄소보조금 축소·폐지 계획은 현재 감축 목표를 참고하여 국토교통부의 자체 인력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정부(국토교통부 및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광역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25%를 수소버스(친환경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차량 감소를 위해 수소전기차에 수소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21.9.부터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이후 지급단가를 3,500원 → 3,600원 → 5,000원으로 지속 상향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0	안 제21조(공공교통 이용 확대)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공공교통 이용활성화 사업을 실시 중으로, 제정안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예산('26)</th></tr><tr><td>벽지노선지원 (지역자율)</td><td>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벽지노선에 대해 국가에서 그 일부를 지원, 벽지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증진에 기여</td><td>40,298</td></tr><tr><td>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제주, 세종)</td><td>공공형버스 및 공공형택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td><td>45,219</td></tr><tr><td>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td><td>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실시</td><td>210,350</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벽지노선지원 (지역자율)	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벽지노선에 대해 국가에서 그 일부를 지원, 벽지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증진에 기여	40,298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제주, 세종)	공공형버스 및 공공형택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45,219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실시	210,350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벽지노선지원 (지역자율)	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벽지노선에 대해 국가에서 그 일부를 지원, 벽지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증진에 기여	40,298													
도시형교통모델(지역자율, 제주, 세종)	공공형버스 및 공공형택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45,219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실시	210,350													
11	안 제22조(정의로운 전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모빌리티전환 시책 마련 및 모빌리티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해당사자를 참여토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의견수렴·참여 절차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2	안 제24조(이해당사자의 참여)														
13	안 제23조(교통데이터의 생산과 공개)	－	• 미대상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교통데이터 생산을 위해 매년 국가교통조사 실시 및 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예산('26)</th></tr><tr><td>국가교통조사</td><td>교통 SOC 수요 예측과 각종 교통정책 수립 시 활용되는 핵심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교통조사를 수행하여 교통DB 구축·운영</td><td>6,138</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국가교통조사	교통 SOC 수요 예측과 각종 교통정책 수립 시 활용되는 핵심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교통조사를 수행하여 교통DB 구축·운영	6,138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26)													
국가교통조사	교통 SOC 수요 예측과 각종 교통정책 수립 시 활용되는 핵심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교통조사를 수행하여 교통DB 구축·운영	6,138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4	안 제25조(교통사업종사자의 참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업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모빌리티전환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진단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해당 시책·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5	안 제26조(주민제안제도의 시행)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문제의 해결과 모빌리티전환에 대한 주민제안 제도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주민제안 제도의 실시 지역 및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16	안 제28조(재정계획의 수립)	-	• 미대상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도로, 철도, 공항 등 국가기간 교통시설 및 지방교통시설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통이동권 보장 및 모빌리티전환에 대한 재정계획 수립은 현행 재정투입계획을 참고하여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 계획은 제6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6~'30년)으로 2025년 수립됨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적정모빌리티서비스 기준 마련(안 제11조)
 - 제정안에 따라 국민이 적절한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적정 모빌리티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
 - 연구용역은 추계기간 첫 해인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 사례로 국토교통부는 2020년 ‘광역교통 지표개발 및 최저서비스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사업비는 7,400만원임
-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적정모빌리티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400만원(연평균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적정모빌리티서비스 기준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적정모빌리티서비스 기준 마련	74	-	-	-	-	74	15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1] 부문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부문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₂eq)

구분	부문	기준연도('18)	2030 NDC ('18比 감축률)
배출	배출량*	727.6	436.6 (△40.0%)
	전환	269.6	145.9 (△45.9%)
	산업	260.5	230.7 (△11.4%)
	건물	52.1	35 (△32.8%)
	수송	98.1	61.0 (△37.8%)
	농축수산	24.7	18.0 (△27.1%)
	폐기물	17.1	9.1 (△46.8%)
	수소	-	8.4
	기타(탈루 등)	5.6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CCUS	-	-11.2
	국외 감축**	-	-37.5

*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제거량)

**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

○ 연도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₂eq)

부문	2018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전환	269.6	223.2	218.4	215.8	211.8	203.6	189.9	173.7	145.9
산업	260.5	256.4	256.1	254.8	252.9	250	247.3	242.1	230.7
건물	52.1	47.6	47	46	44.5	42.5	40.2	37.5	35
수송	98.1	93.7	88.7	84.1	79.6	74.8	70.3	66.1	61
농축수산	24.7	22.9	22.4	21.9	21.2	20.4	19.7	18.8	18
폐기물	17.1	15.1	14.7	14.1	13.3	12.5	11.4	10.3	9.1
수소	(-)	3.4	4.1	4.8	5.5	6.2	6.9	7.6	8.4
탈루 등	5.6	5.1	5	5	4.9	4.8	4.5	4.2	3.9
흡수원	-41.3	-33.5	-31.3	-28.9	-30.4	-29.1	-28.3	-27.6	-26.7
CCUS	(-)	-	-	-	-0.4	-0.7	-1.3	-3.2	-11.2
합계	686.3*	633.9	625.1	617.6	602.9	585	560.6	529.5	436.6**

* 국제사회에 제출된 '18년 총 배출량은 727.6백만톤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86.3백만톤이며, 모든 연도별 합계는 순배출량 기준(부문별 소수점 첫째자리 아래 절삭)

** 국내감축은 관련 국제기준 확정, 최초 활용시기('26년 예상)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예정으로 '30년 목표에만 반영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부문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₂eq)

총괄(순배출량)		2018년	2024년	2035 NDC	
				△53%	△61%
				배출량 (‘18比 감축률)	배출량 (‘18比 감축률)
순배출량		742.3	651.4	348.9	289.5
배출	전력	283.0	218.3	88.3 (△68.8%)	70.0 (△75.3%)
	산업	276.3	250.9	209.1 (△24.3%)	190.6 (△31.0%)
	건물	52.1	43.6	24.2 (△53.6%)	22.8 (△56.2%)
	수송	98.8	97.5	39.3 (△60.2%)	36.8 (△62.8%)
	냉매	23.1	35.0	27.4 (△18.6%)	25.5 (△10.4%)
	농축수산	27.6	25.6	20.0 (△27.5%)	19.5 (△29.3%)
	폐기물	19.4	17.5	9.2 (△52.6%)	9.0 (△53.6%)
	탈루	3.7	3.2	2.6 (△29.7%)	2.4 (△35.1%)
	수소	0	0	8.1	6.5
	흡수원	-41.6	-40.2	-38.3	-39.3
흡수 및 제거	CCUS	-	-	-11.2	-20.3
	국제감축	-	-	-29.8	-34.0

[참고자료 2] 제정안 관련 현행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26)
국토 교통부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대중교통 현황조사)	- (목적)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주요내용) 대중교통 운행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대중교통 최소서비스수준, 대중교통과 승용차 통행시간 비교 조사 등	800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대중교통 시책평가)	- (목적)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체계적인 대중교통 계획수립과 효과적 정책시행을 유도 - (주요내용)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대중교통시책을 격년제로 평가	206('25) *격년제로 시행
	교통정책종합연 구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 (목적)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현황조사 및 관련 정책을 진단·평가 - (주요내용) 인구 10만 이상의 75개 지자체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실시, 제도개선안 연구 등 수행	142
	벽지노선지원	- (목적) 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벽지노선에 대해 국가에서 그 일부를 지원, 벽지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9개 道 벽지노선 운행손실금에 대한 재정 지원 실시 (보조율 30%)	40,298
	도시형교통모델 (지역자율, 제주, 세종)	- (목적) 공공형버스 및 공공형택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공공형버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행횟수 및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방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콜버스 등 수요응답형 버스 교통수단 등 도입 지원 ·(공공형택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 중인 공공형택시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사각·취약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	45,219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 (목적)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실시 - (주요내용)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충분한 광역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차운행 지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출퇴근 시간대 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되도록 구입 지원 ·(광역버스사업 지원) 광역버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선 신설의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한 용역 추진	210,350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26)
	국가교통조사	- (목적) 교통 SOC 정책 수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자료(교통DB) 제공 - (주요내용)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교통조사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평가, 교통시설 설계 시 장래수요예측 등 기초자료 제공 ·교통DB 구축·운영 및 통계자료 작성	6,138

자료: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